



승인 번호
제 118040 호

								※ 조사원 기입	※ 응답자 기입		
지방관서 번 호	사업체 번 호						산업분류 번 호	사업체 규 모	응답 자 구분	① 사업주	② 대리응답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사업주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활용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제23조, 통계법 제15조·제18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귀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업종별·규모별로 대표성·신뢰성을 고려한 표본추출 결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최저임금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은 부탁드립니다. 기업활동으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가능한 **사업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조사 참여: www.narastat.kr/mwc2022i
- 조사표 파일 다운로드: www.minimumwage.go.kr

* 조사 참여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를 참조

* 조사결과 조회: kosis.kr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보기항목에 ○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면,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재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재하되, 화살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적어 주십시오.
- 문항 중, 2개 이상 선택해야 하는 복수 응답 문항은 1순위로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 의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아래는 조사원이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주 관 기 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표 본 구 분	조사 표 방 법	회수 연번
담 당 감 독 관	소 속 _____ 청 _____ 과			① 본표본
	이 름			② 예비표본
	연락처			③ 예비표본(추가)
조 사 기 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표 회수 방법	기입 방법	
담 당 조 사 원	이 름	① 현장 회수	① 응답자 기입식	
	연락처	② FAX, E-mail 회신	② 조사원 면접식	
	이 메 일	③ 인터넷 응답		
	팩 스	④ 전화 응답		
		⑤ 기타()	③ 기타()	



최저임금위원회

A

사업체 현황

기본현황		* 주요 생산품목(재화 또는 서비스)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 을 기입				
업체명						
소재지(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노조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주요 생산품목 (재화 또는 서비스)*				전화번호	() -	
작성자 성명	직책			팩스번호	() -	

1 경영여건

	2021년(실적액)				2022년(1~12월 추정액)			
1) 매출액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2) 인건비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 인건비: 결산서 상 인건비 총액(임금,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 복리시설 부담액, 복리후생비, 채용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등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일체 비용

1-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올해 경영사정은 어떻습니까?

① 좋아졌다 →

- 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정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② 원자재 가격 하락
 ③ 인건비 감소 ④ 임차료 감소
 ⑤ 기타()

② 나빠졌다 →

- 2)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② 원자재 가격 상승
 ③ 인건비 상승 ④ 임차료 상승
 ⑤ 기타()

③ 전년과 비슷하다

2 귀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성별·고용형태별로 몇 명입니까? ('22.11.15.현재)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고용형태별/성별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정규직	명	명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 비정규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 **기간(계약)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목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인상액)	(인상률)		주40시간 기준	(인상액)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20년	8,590	↑ 240	2.87%	68,720	↑ 1,920	1,795,310	↑ 50,160	1,941,340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23년	9,620	↑ 460	5.0%	76,960	↑ 3,680	2,010,580	↑ 96,140	2,174,120
								↑ 103,960

< 최저임금 감액적용: 최저임금액의 90%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3개월 이하 수습 중 10% 감액)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20년	7,731	61,848	1,615,779	1,747,206		
'21년	7,848	62,784	1,640,232	1,773,648		
'22년	8,244	65,952	1,722,996	1,863,144		
'23년	8,658	69,264	1,809,522	1,956,708		

▪ 최저임금 산입범위(2022년 기준)

-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② 법정 유급주휴수당

③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④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

▪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1,914,440원×10%=191,444원) 해당 부분

③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1,914,440원×2% =38,288원) 해당 부분

*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산입됨

3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받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몇 명입니까?
(전체근로자가 아님에 유의)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받는 근로자 수		'22.11.15.현재		'21.12월말	
정 규 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합 계			명		명
여 자			명		명

3-1 올해(22년: 9,16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없음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3)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4

올해(22년: 9,16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 ②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
- ③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
- ④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다

5

올해(22년: 9,16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음 항목별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항목	보기		
1) 순이익(이윤)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2) 제품(서비스) 가격	<input type="checkbox"/> ① 인상되었다	<input type="checkbox"/> ② 인하되었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3) 인건비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4) 신규채용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5) 근로시간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5-1

올해(22년: 9,16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산정 방식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변화가 없었다
- ②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포함)하였다
- ③ 호봉급, 직무급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 ④ 기타()

6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 ②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 ③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 ④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 ⑤ 기타()
- ⑥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7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 ② 적정한 수준이다
- ③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 ④ 받는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워 모르겠다
- 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8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근로자의 생계비
<input type="checkbox"/> ③ 노동생산성
<input type="checkbox"/> ⑤ 경제성장률
<input type="checkbox"/>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input type="checkbox"/> ④ 소득분배 상황
<input type="checkbox"/> ⑥ 물가상승률
<input type="checkbox"/> ⑧ 기업의 지불능력 |
|--|---|

9

올해(22년: 9,16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
|--|--|---------------------------------|

10

'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2년: 9,160원)보다 5.0%가 인상된 시급 9,62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
|--|--|---------------------------------|

11

'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3년(9,62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동결(9,620원)
<input type="checkbox"/> ③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9~12% 미만(10,486원~10,774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15% 이상(11,063원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② 3% 미만(9,909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6~9% 미만(10,197원~10,486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12~15% 미만(10,774원~11,063원 미만) |
|--|---|

12

귀하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숙소 제공
<input type="checkbox"/> ③ 통근차량 운행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
<input type="checkbox"/> ④ 상품권 지급
<input type="checkbox"/> ⑥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
|--|---|

12-1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됩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제공된다 | <input type="checkbox"/> ② 제공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③ 외국인 근로자 없음 |
|---------------------------------|-------------------------------------|---------------------------------------|

13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정부
<input type="checkbox"/> ⑤ 최저임금위원회 | <input type="checkbox"/> ②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⑥ 노동자단체 | <input type="checkbox"/> ③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④ 사용자단체 |
|---|--|--|----------------------------------|



다음 장의 부가조사표 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조사표 (근로자 최대 10명 기입)

참고

- 사업주께서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9,160\text{원} \times 1.5\text{배} = 13,740\text{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작성
 - '③ 임금액'을 '④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5배(시급 13,7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사 대상(초과하면 제외)
 - '① 근로자 번호'는 근로자 조사표 표지 오른쪽 위에 있는 '근로자 번호'에 그대로 옮겨 적음
- 작성 요령
 - ② 지급주기: 근로계약 시 정해진 임금 지급주기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
 - ③ 임금액: 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기준에 따른 임금액을 기재
 - 연봉제인 경우는 기본 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월할 계산하여 '월급제'로 표시하고 임금액 기재
 -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8시간×5일+8시간)×4.345주)이 아닌 경우, 월 환산액은 '시급 × ④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
 - 임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으로 기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법정주휴수당은 포함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등 가산임금은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약정 우급후일 임금 등은 제외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191,444원)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의 2%(38,288원) 초과 금액은 포함)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금액은 불포함	
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월 500,000원, 복리후생비 월 20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Rightarrow 상여금 308,556원(500,000원 - 191,444원), 복리후생비 161,712원(200,000원 - 38,288원)은 '③임금액'에 포함			

- ④ 근로시간: ③ 임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기초인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

① 근로자 번호	② 임금 지급주기	< 임금 산정기준 >		
		③ 임금액	→	※ ③임금액 ÷ ④근로시간 ≤ 13,740원 ④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1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2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3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4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① 근로자 번호	② 임금 지급주기	< 임금 산정기준 >	
		③ 임금액	→ ④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5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6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7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8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9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10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 응답 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번호는 고마움을 담아 답례품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본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드릴 수 있음)

응답자 성명		
무선전화	()	-
유선전화	()	-

(2) 심층 면접조사 동의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의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선택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문조사 이후에 필요 시 추가 면접조사(전화, 대면)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 진행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연구진에게 제공 ·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심층 조사 대상 선정 및 진행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아래 기입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함: _____ (서명)

연락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분류번호 (표지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중분류
C 제조업	<p>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p> <p>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p>
G 도매 및 소매업	<p>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p> <p>도매 및 상품 중개업</p>
H 운수 및 창고업	<p>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 운송업</p> <p>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p>
I 숙박 및 음식점업	<p>숙박업</p> <p>음식점 및 주점업</p>
L 부동산업	부동산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p> <p>사업 지원 서비스업</p>
P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p>보건업</p> <p>사회복지 서비스업</p>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p>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p> <p>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p>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p>협회 및 단체</p> <p>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p> <p>기타 개인 서비스업</p>